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 사회적 기업 정의

- 핵심적 두 가지 요소
 - 기업을 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 목적 실현**일 것
 -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할 것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의 정의
 -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하이브리드 조직(부분적으로 영리, 부분적으로 비영리)

	순수한 자선(purely philanthropic)	하이브리드 (부분적으로 비영리 or 영리)	순수한 기업(purely commercial)
서비스 대상	무료	저렴 또는 시장가격 지불 +무료	시장가격
자본	기부금 및 보조금	저리의 자본+시중금리 자본 +보조금 및 기부금	시중금리의 자본
직장	자원봉사자	시장가격 이하의 임금 +자원봉사 + 정상 급여의 직원	시장가격의 급여
공급자 supplier	현물기부	저렴한 공급 +현물기부 +시장가격의 공급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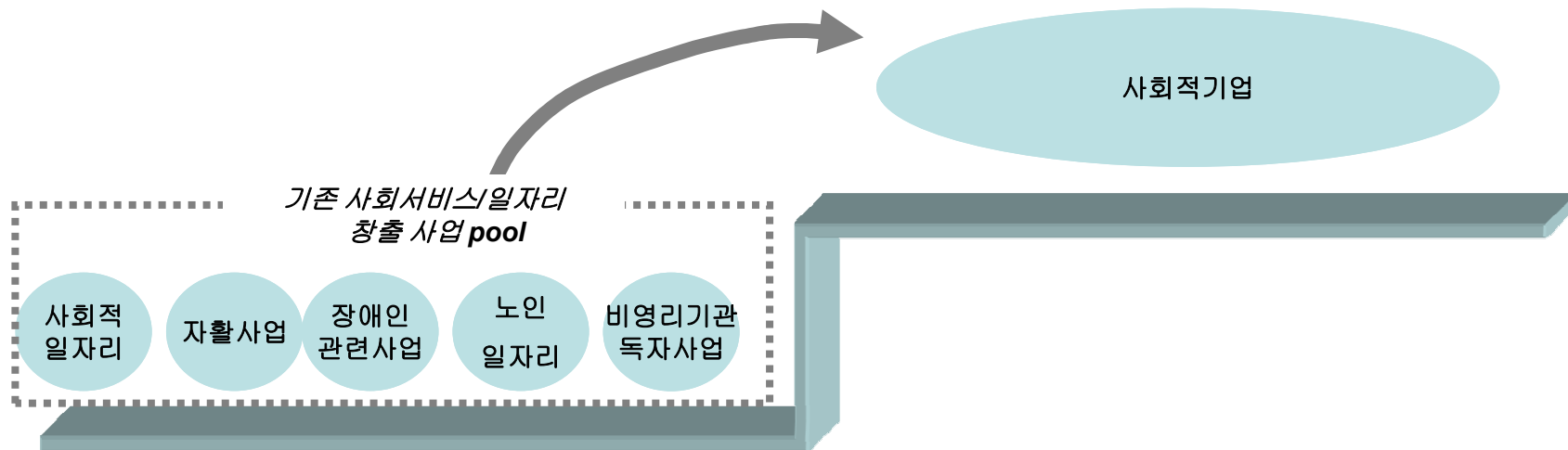
2.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도입

-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양적 감소 추세
- 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
-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 이후, 범정부적 확대

●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육성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이고, 서비스의 질과 성과관리 등이 미흡
- 지속가능하고 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및 시행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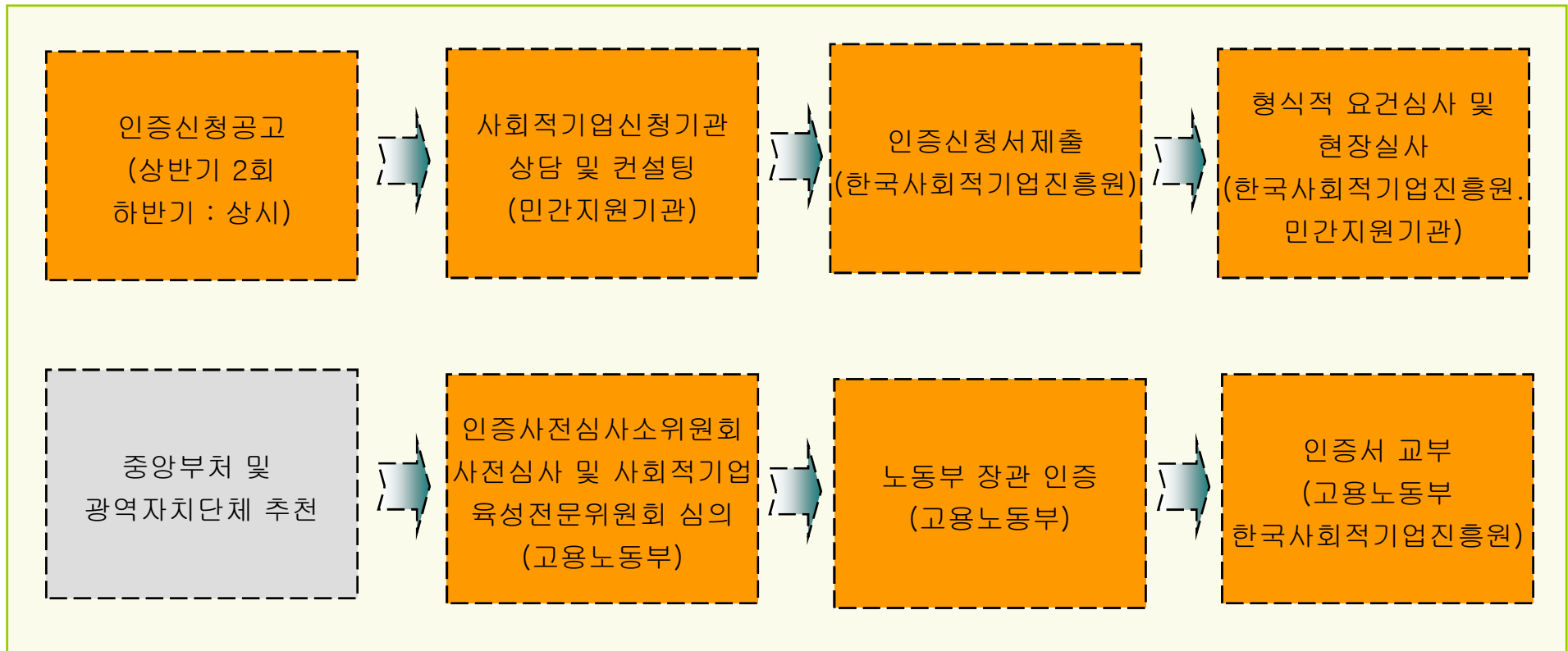
3.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및 계획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됨)

-노동부에 설치하여 위원장은 위원장(노동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됨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2.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4.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4.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의	인증서 교부
1회	10.3.7(월) ~ 3.31(목)	5월	5월
2회	10.5.11(수) ~ 5.31(화)	7월	7월
상반기 2회의 공고후 7월부터는 상시 접수 및 상시 인증제 시행			

5.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서류

제출서류	비고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 허가증 사본 등(사업자등록증 필수)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회적목적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택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필수)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서류	각종 지원 협약서 및 약정서, 계약서 등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정관이나 규약 등	공증 또는 등기 후 제출(주무관청 신고)
인증신청기관 개요	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5.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유급근로자 수
	소재지(주된 사무소)	

조직형태	[] 「상법」에 따른 회사 []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주된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기타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

재정 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인증신청서

- 신청인
 - 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ex : (사)○○협회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사업단 대표는 사업단의 대표자 기입)
 -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당시 대표자, 자원봉사자 제외한 근로자수 기입
근로계약형태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자 해당
- 조직형태
 - 신청기관(단체)의 해당 형태를 기입
- 주된목적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중 택1 기입
 - 신청하려는 분야에 표시
- 연계기업명
 - 신청사업에 연계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기입
-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신청사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지원(현금, 현물 등)기입
- 재정지원사항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 지자체 지원시 내역을 모두 기입

5.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 신청 기관 개요

[첨부1]

인증 신청기관 개요			
◆ 기관 개요			
기관명 ①	홈페이지주소	해당기관명 기입	
	대표전화번호		
담당자 ②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FAX)		E-mail
단체연혁 ③	설립후 연혁을 기치 예시) 98. 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 1. 1. ~ 7. 30 장애인사업 실시 (3,000명) '04. 2. 5. 노인복지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사업내용			
사업명 ④	사업이 여러기일 경우 모두 기치 기입		
사업지역 ⑤		사업분야 ⑥	
수혜대상자 ⑦ (인원수, 특성 등)			
사업내용 ⑧ (서비스내용, 가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사업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 장애인, 독후, 청소년 등 (1가구당 월 5,000원)		
수익확보수단 ⑨	총수입 (매출액) 확보수단 (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후원회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등		

*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관광·운동 ⑥보육 ⑦안정보급 및 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 기타

1. 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담당자
 - 신청사업 관리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기입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
3. 단체연혁
 - 설립 후 기관의 연혁을 중요사항만 기입
 - 설립일, 주요사업참여일 등
4. 사업명
 - 정관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사업단 명칭 기입
5. 사업지역
 - 신청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을 기입
 - ex : 전국 또는 경기, 수원, 서울 등
6. 사업분야
 -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해당 분야 번호로 기입
7. 수혜대상자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서비스수혜자수 기입
 - 취약계층 수와 특성(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등)기입
8. 사업내용
 - 인증 신청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입
9. 수익확보 수단
 - 영업활동 수입(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기입

5-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조직형태

1. 조직형태	
인증 요건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구비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쟁점 사항	○영농조합은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함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후 2년 이내 ' 분리독립계획서 ' 필수 제출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독립법인형태의 지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 인사, 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인증 가능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5-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조직형태

<p>쟁점 사항</p>	<p>○ 사업단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은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정관변경이 어려운 경우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사업단의 독립성에 대하여 회의 후 공증 필요 - 사업단 자체의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필요 - 사업단 다수의 대표직 겸임은 불가 - 동일 모법인 산하에 여러 사업단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신청이 가능하나, 법인내 복수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p>쟁점 사항</p>	<p>○ 삼중구조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단 3중구조의 경우의 문제에서는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바로 위 모단체의 정관 제출시 미인정) ex) 000여성회-000지부-000사업단, 000사회복지법인-000복지관-000사업단 등
<p>쟁점 사항</p>	<p>○ 공공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시리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5-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유급근로자 고용

2. 유급근로자 고용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구비 서류	<p>[유급근로자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비)정규직,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명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확인서(적용제외는 불필요) ○명부 및 임금대장은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포함
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완료 후 고용지원센터,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현장실사 또는 고용보험망 조회를 통하여 2주 이내 승계 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 인증 취소 ○근로자성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5-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사회적목적실현

3. 사회적목적실현	
인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이상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각각 20%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형 :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서비스 비율이 20%이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부문 : 지역사회 공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증 가능 - 위의 고용 및 서비스 비율 이외에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현황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 구체화 부문 : 기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은 최초 고용/서비스 제공일 기준 3년 이내만 인정함 ○직업훈련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의 신청에도 20% 이상의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요구.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는 30% 이상으로 별도 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단순 일자리제공뿐만이 아닌 별도의 사회적목적 실현해야 인정. ○일자리제공형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 노숙자 고용 기관은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인정 ○1회성기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으로는 사회적목적 불인정, 종교적 목적 실현 실적은 사회적목적 불인정. ○타 법 준수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은 사회적목적 실현 인정

취약계층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순번	취약계층	제출서류																		
1	저소득자, 수급권자 등	<p>1. 수급자 증명서</p> <p>2. 2011년 저소득층 관련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r> </thead> <tbody> <tr> <td>2010년 가 구 월 평균소득</td> <td>1,404,151</td> <td>2,498,333</td> <td>3,687,363</td> <td>4,228,752</td> <td>4,685,492</td> </tr> <tr> <td>60%</td> <td>842,491</td> <td>1,499,000</td> <td>2,212,418</td> <td>2,537,251</td> <td>2,811,295</td> </tr> </tbody> </table> <p>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가구소득을 통한 저소득층 확인은 주민등록등본내 근로가 가능한 모든 사람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p>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10년 가 구 월 평균소득	1,404,151	2,498,333	3,687,363	4,228,752	4,685,492	60%	842,491	1,499,000	2,212,418	2,537,251	2,811,29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10년 가 구 월 평균소득	1,404,151	2,498,333	3,687,363	4,228,752	4,685,492															
60%	842,491	1,499,000	2,212,418	2,537,251	2,811,295															
2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용] 55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3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용]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취약계층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순번	취약계층	제출서류
4	성매매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제출서류]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사람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사람 • [제출서류]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 시 14일 이내 확인서 발급

취약계층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순번	취약계층	제출서류
6	북한 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동사무소)
7	가정 폭력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제출서류]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단순 한부모가족은 제외.
9	결혼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제출서류]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 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증 상 F-2 또는 F-5

취약계층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순번	취약계층	제출서류
1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업취약계층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논의. 결정 ※ “장기실직자”는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를 인정 (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장기실직자로 인정된 경우 구직 등록하지 않았더라고 인정) ※ (법무부 의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의 취약계층

대상	해당사항
<p>불특정 다수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손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2.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 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3.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 (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5-2-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일자리제공형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간이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근로자

- 전체 근로자 : 신청일 당시 유급근로자 기입
- 취약계층 근로자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입
- 전체근로자/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기입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재무제표 상의 판매관리비 + 제조비
- 총노무비 : 인건비, 상여금 등 직접인건비만 기입
대표자의 인건비도 노무비임.
- 총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만 기입
제조의 경우 제조원가는 제외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 30%시 인증 요건 충족

4.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앞의 취약계층 분류에 의해 기재

5-2-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 : 신청일 당시 서비스 수혜자 기입
- 취약계층 수혜자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입
- 전체수혜자/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기입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재무제표 상의 판매관리비 + 제조비
- 총노무비 : 인건비, 상여금 등 직접인건비만 기입
대표자의 인건비도 노무비임.
- 총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만 기입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는 제외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 30%시 인증 요건 충족

4.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앞의 취약계층 분류에 의해 기재

5-2-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혼합형 사실확인서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일자리제공

- 전체 근로자 : 신청일 당시 유급근로자 기입
- 취약계층 근로자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입
- 전체근로자/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기입

3.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 신청일 당시 서비스 수혜자 기입
- 취약계층 수혜자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입
- 전체수혜자/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기입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재무제표 상의 판매관리비 + 제조비
- 총노무비 : 인건비, 상여금 등 직접인건비만 기입
대표자의 인건비도 노무비임.
- 총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만 기입
제조의 경우 제조원가는 제외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 30%시 인증 요건 충족

5.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앞의 취약계층 분류에 의해 기재

5-2-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지역사회공헌형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	※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 (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수혜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지역 공헌 현황	지역 자원 활용 (인적·물적 자원)		※ 구체적 실적 기재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증대		※ 구체적 실적 기재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일자리제공
 - 전체 근로자 : 신청일 당시 유급근로자 기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 당해 기초지역 거주자
 - 전체근로자/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기입
3.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 신청일 당시 서비스 수혜자 기입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 당해 기초지역 거주자
 - 전체수혜자/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기입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재무제표 상의 판매관리비 + 제조비
 - 총노무비 : 인건비, 상여금 등 직접인건비만 기입
대표자의 인건비도 노무비임.
 - 총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만 기입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는 제외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 30%시 인증 요건 충족
5.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앞의 취약계층 분류에 의해 기재
6. 지역 공헌 현황
 - 구체적인 실적 기재

5-2-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기타형 사실확인서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p>「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p>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2. 일자리제공의 대상 및 내용
 - 신청기관의 유급근로자와 그 중 취약계층 근로자 기입
3.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 신청기관의 서비스수혜자수와 그 중 취약계층 수혜자 기입
 -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활동 사진 등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재무제표 상의 판매관리비 + 제조비
 - 총노무비 : 인건비, 상여금 등 직접인건비만 기입
대표자의 인건비도 노무비임.
 - 총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만 기입
제조의 경우 제조원가는 제외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 30%시 인증 요건 충족

5-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민주적 의사결정구조

4.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인증 요건	<p>○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p> <p>○ 필수 참여자의 범주는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p> <p>○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p> <p>-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p>
구비 서류	<p>[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구비 서류]</p> <p>-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p> <p>-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반드시 명시</p> <p>-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공증)</p>
쟁점 사항	<p>○회의체 실제 운영여부</p> <p>-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u>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u>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p> <p>-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 대표 포함,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포함, 혼합형 및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p> <p>-<u>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을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u></p> <p>○기업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이 모회사로 편입되지 않으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재투자 시 인증</p>

5-5.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요건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신청서	원	원	원	%
	검토기관	원	원	원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함					
구비 서류	<p>[총수입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부 필수), 결산보고서 <p>[총노무비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등 <p>[서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업력 1년 이상은 1년치 제출) 				
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바우처,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원부자재 금액은 제외 ○총노무비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상여금, 잡급 등이 포함, 대표자 급여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 ○외부법인체에 임가공 용역제공시 노무비에서 제외, 				

5-5-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8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 7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 사 명 :			
회계단위 :			(단위 : 원)
과 목	제 8 (당기)	제 7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884,789,737	886,274,872
삼출매출	884,789,737	885,274,872	
I. 매출원가		814,011,795	
제품매출원가		814,011,795	
기초 제품 지포액	112,829,081		
당기 제품 제조원가	859,737,784		
기말 제품 지포액	189,886,020		
II. 매출총이익		80,747,942	886,274,872
III. 판매관리비		1,039,826,907	813,699,884
크립급여	146,969,400		138,897,530
삼어급	71,819,440		54,898,570
제수급	137,979,070		122,494,070
퇴직급여충당금전입	48,908,842		51,715,700
퇴직급여			249,810
기타후생급여	9,147,188		7,354,180
여비교통비	1,275,210		1,287,488
저세공과금	11,892,300		10,703,320
갈과삼각비	89,515,942		
차량유각비	38,800,080		28,785,111
의약비	200,000		
수출비및수수료	57,320,512		46,010,409
의료보험료	22,494,990		10,074,180
주말교정자산상각	888,800		
국민연금	32,969,210		17,541,480
산재보험료	8,738,220		
고용보험료	7,029,290		
보험비	114,570,878		75,311,515
각종보험비	400,000		8,400,000
사설비	32,238,682		87,332,318
법령미배당	54,923,615		44,967,380
주식비	157,267,080		108,019,148
현수금급여			800,000
IV. 영업순이익		988,777,985	248,324,192
V. 영업외수익		989,863,115	843,132,441
기타예금이자수입	15,143,823		4,583,988
상민포	15,317		13,287
기타잡수입	284,885,719		229,904,938
검산보조금수입	534,701,570		403,095,080
자본보조금수입			75,980,000
기타보조금수입	28,738,000		18,892,000
후원금수입	48,218,680		12,923,200
법인정당금	100,000,000		100,000,000
VI. 영업외비용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06,180	894,808,249
VIII. 법인세비용			
IX. 당기순이익		906,180	894,808,249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제 8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 7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 사 명 :			
회계단위 :			(단위 : 원)
과 목	제 8 (당기)	제 7 (전기)	
	금 액	금 액	
I. 재 료 비			
II. 부 재 료 비			
III. 노 무 비			
IV. 제 조 경 비	859,737,754	691,230,878	
근로인 급여	338,773,300		321,786,650
근로인 퇴직금	30,131,320		61,780,080
재료	298,391,356		200,934,028
재료	134,908,982		79,050,682
지급수수료	15,547,038		7,301,545
운송비	14,409,125		7,752,120
홍보 및 광고비	13,960,000		1,540,000
피복비	4,560		1,733,181
작업장 소모품비	12,612,073		8,952,592
훈련생수당			400,000
교육 훈련비	1,000,000		
V. 당기 총 제조 비용	859,737,754		691,230,878
VI. 기초 재공품 재고액			
VII. 타계정에서 대체액			
VIII. 합 계	859,737,754	691,230,878	
IX. 기말 재공품 재고액			
X. 타계정으로 대체액			
XI. 당기제품 제조원가	859,737,754	691,230,878	

5-6.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정관, 규약의 구비

6. 정관, 규약의 구비	
인증 요건	<input type="checkbox"/> 목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명칭 <input type="checkbo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input type="checkbox"/>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자원 조달, 회계 등)
구비 서류	<input type="checkbox"/>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input type="checkbox"/>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 반드시 필요 <input type="checkbox"/>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하여 공증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제출
쟁점 사항	<input type="checkbox"/>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적임

5-7.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7.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인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비 서류	<p>[수익배분 구비 서류]</p> <p>-정관제출(공증 또는 등기 필요)</p>
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불인정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u>주주동의서 작성여부</u>,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6-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재정지원 *심사·선정 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 자부담율 :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10년 1인당 월 932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100%), 2년차 90%(3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70%(50%)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한도로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10년 18개 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상금 : 214백만원, 20팀 * 창업청년/일반 : 1위 (30백), 2위(20백), 3위(10백), 4위(7백) * 아이디어 : 1위(5백), 2위(3백), 3위(2백), 4위(1백) ◦창업지원 * 창업청년/창업일반 : 팀당 20백 이내, 15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백 이내, 2개팀

6-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연간 10~20백만원, 3년간 총 20~3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6개청)·업종별(6개업종) 네트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3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50억) 실시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74천원)

7. 사회적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제9조(정관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17조(보고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1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0조(생략)</p>	<p>제1조(목적)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제9조(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2조(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생략)</p>	<p>제1조(목적) 제2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재척.기피.회피) 제4조(육성위원회의 회의) 제5조(간사) 제6조(수당과 여비) 제7조(의견의 청취) 제8조(운영세칙) 제9조(인증신청) 제10조(인증서의 발급)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13조(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제15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제18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부칙></p>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이성훈
031-267-9392
010-3253-6771
ritter15@ggwf.or.kr

